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2 장 교 회 제 1 절 개체교회	**제 2 장 교 회** 제 1 절 개체교회	
【205】 제5조(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 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① 개체교회는 담임할 교역자가 있고 등록한 입교인이 **12명** 이상이며 공동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정된 예배처소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다.	【205】 제5조(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 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개체교회는 담임할 교역자가 있고 등록한 입교인이 **5명** 이상이며 공동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정된 예배처소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실제로 개척할 때 교인이 없어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 필요
【508】 제8조(당회의 구성) 당회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② 등록된 입교인 **12명** 이상의 교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508】 제8조(당회의 구성) 당회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② 등록된 입교인 **5명** 이상의 교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의회법(관련조항 개정)
【529】 제29조(구역회의 구성) 구역회는 개체교회 1개소 이상, 입교인 **12명** 이상이 있고 담임자의 생활비와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구성된다.	【529】 제29조(구역회의 구성) 구역회는 개체교회 1개소 이상, 입교인 **5명** 이상이 있고 담임자의 생활비와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구성된다. **<개정>**	
【1804】 제4조(진급과정) 구역담임 교역자, 수련목회자, 군종사관후보생, 수련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 <개정> ②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여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1804】 제4조(진급과정) 구역담임 교역자, 수련목회자, 군종사관후보생, 수련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 ②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여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과정법(관련조항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연회 개최 14일 전까지 임지(입교인 **12명** 이상의 개체교회 담임, 선교사 또는 감리회 인정 기관, 현재 수련과정에 있는 교회나 타 교회 부담임자)가 확정되면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개정>	연회 개최 14일 전까지 임지(입교인 **5명** 이상의 개체교회 담임, 선교사 또는 감리회 인정 기관, 현재 수련과정에 있는 교회나 타 교회 부담임자)가 확정되면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2 장 교 회 제 1 절 개체교회 【205】 제5조(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 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제 2 장 교 회** 제 1 절 개체교회 【205】 제5조(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 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⑦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고려인 및 다문화인 교역자는 공유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 <신설>**	⑦ 북한이탈주민 등 교역자는 공유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비고
【206】 제6조(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 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체교회가 분립 또는 통합하고자 할 경우, 당해 개체교회의 당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산권은 구역회에서 처리한다.	【206】 제6조(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 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체교회가 분립 또는 통합하고자 할 경우, 당해 개체교회의 당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산권은 구역회에서 처리한다. **<개정>**	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을 위한 당회의 재적회원 축소

현행	개정안	비고
【518】 제18조(의사 정족수) 당회의 의사 정족수는 당회에 출석한 당회 회원의 수로 한다. 다만, 교회 분립과 통합을 위한 당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한다.	【518】 제18조(의사 정족수) 당회의 의사 정족수는 당회에 출석한 당회 회원의 수로 한다. 다만, 교회 분립과 통합을 위한 당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개정>**	의회법(관련조항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2 절 교 인	제 2 절 교 인	
【211】 제11조(교인의 의무) 교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해야 한다. ① ~ ④ <생략> ⑤ 교회**에 헌금**과 교회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 ⑥ ~ ⑩ <생략>	【211】 제11조(교인의 의무) 교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해야 한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회**의 의무금(십일조)**과 교회사업에 대한 **헌금**을 낸다.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교회의 의무금을 십일조로 명시함
제 10 절 개체교회 부서와 조직	제 10 절 개체교회 부서와 조직	
【268】 제68조(재무부의 직무) 재무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확정된 예산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교인들에게 **의무금**을 부담케 하고 헌금할 것을 청한다.	【268】 제68조(재무부의 직무) 재무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확정된 예산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교인들에게 **교회의 의무금(십일조)**을 부담케 하고 헌금할 것을 청한다. **<개정>**	
【517】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당회 회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	【517】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당회 회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의 의무금(십일조)**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 **<개정>**	의회법(관련조항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2 장 교 회 제 5 절 장 로	**제 2 장 교 회** 제 5 절 장 로	
【225】 제25조(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④ <생략> ⑤ 담임자의 부재나 유고 시에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부담임자나** 장로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225】 제25조(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담임자의 부재나 유고 시에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장로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⑥ ~ ⑦ <현행과 같음>	⑤ 장로의 직무이므로 부담임자 삭제 【249】 제49조(부담임자의 직무) 2항에 명시
【226】 제26조(장로의 파송) <생략> ① <생략>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송 받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명하려고 하는 장로가 담임자 **및** 본인 또는 지방회 인사위원 3명 이상의 동의로 감리사에게 요청한 경우 ③ <생략>	【226】 제26조(장로의 파송)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송 받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명하려고 하는 장로가 담임자**나** 본인 또는 지방회 인사위원 3명 이상의 동의로 감리사에게 요청한 경우 **<개정>** ③ <현행과 같음>	② 자구수정
【227】 제27조(장로의 인사관리) 장로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장로가 다른 **지방회의 교회로** 이명하려면 담임자 및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지방회 감리사가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의 소속 지방회 감리사에게 이명증서를 송부한다. 만일 소속 지방회 감리사가 이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명증서를 송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가 속한 지방회 감리사가 처리할 수 있다.	【227】 제27조(장로의 인사관리) 장로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장로가 다른 **지방회로** 이명하려면 담임자나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지방회 감리사가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의 소속 지방회 감리사에게 이명증서를 송부한다. 만일 소속 지방회 감리사가 이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명증서를 송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가 속한 지방회 감리사가 처리할 수 있다. <개정>	③ 자구수정

현행	개정안	비고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장로는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⑧ 교역자와 동일하게 적용 【293】 제93조(교역자의 신분처리) 1항 참조
【229】 제29조(은퇴장로의 예우) **장로로 은퇴한 이는 원로장로라고 호칭하며**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229】 제29조(**원로 및** 은퇴장로의 예우) **15년 이상 시무하고 은퇴한 장로는 원로장로로, 15년 미만 시무하고 은퇴한 장로는 은퇴장로로 호칭하며**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개정>**	15년 이상 시무→ 원로장로 15년 미만 시무→ 은퇴장로
제 6 절 개체교회 사역자	제 6 절 개체교회 사역자	
【230】 제30조(심방전도사의 자격) 심방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으며 다음 제2항, 제3항, 제4항의 자격을 보유한 23세 이상 된 이 ②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인준한** 국내외 대학교에서 신학 또는 기독교교육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이	【230】 제30조(심방전도사의 자격) 심방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현행과 같음> ②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인준한** 국내외 대학교에서 신학 또는 기독교교육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이 **<개정>**	② 총회 실행부위원회 → 연회 실행부위원회
제 7 절 기관 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제 7 절 기관 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236】 제36조(기관 파송 전도사의 자격) 기관 파송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기관 파송 전도사는 준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이로 군종사	【236】 제36조(기관 파송 전도사의 자격) 기관 파송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관후보생, 수련선교사, 그 밖의 기관에 파송 받은 전도사를 말하며, 감리사가 파송한 기관에서 맡은 일에 사역한다. ② 수련선교사는 선교국에서 선교사 인준을 받은 이 ③ 수련목회자로 전문기관에 파송 받은 이와 수련목회자로서 교육국의 인준을 받아 학원선교사로 파송 받은 이 ④ 군종사관후보생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연세대학교 신학계열에 입학한 후, 군종사관후보생 선발고사에 합격하여 해당학과를 졸업하고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나 연세대학교의 신학계열 대학원에 입학한 이	**⑤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교회 및 소속기관에서는 기관 파송 전도사로 사역할 수 없다. <신설>**	⑤ 수련목회자와 동일하게 개정
【238】 제38조(수련목회자의 파송) ① 수련목회자는 한 교회에 매년 2명까지 총 6명만 파송할 수 있다. 입교인 **80명** 이상의 교회에도 수련목회자 1명을 파송할 수 있다. 파송기관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생략> ③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수련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다.	【238】 제38조(수련목회자의 파송) ① 수련목회자는 한 교회에 매년 2명까지 총 6명만 파송할 수 있다. 입교인 **50명** 이상의 교회에도 수련목회자 1명을 파송할 수 있다. 파송기관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② <현행과 같음> ③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수련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다. **<개정>**	① 수련목회자 파송 대상 교회 확대 80명 이상 → 50명 이상 ③ “배우자 부모” 삽입
【244】 제44조(담임자의 파송) ① ~ ⑤ <생략>	【244】 제44조(담임자의 파송 **및 공동목회) <개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개체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공동목회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목회 교역자는 2명으로 제한한다. <신설>**	⑥ 공동목회 제도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제 3 장 교역자	**제 3 장 교역자**	
제 1 절 연회 회원	제 1 절 연회 회원	
【276】 제76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연회 준회원은 연회 과정고시위원회가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준회원으로 허입한 교역자를 말하며 전도사로 칭한다.	【276】 제76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연회 준회원은 연회 과정고시위원회가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준회원으로 허입한 교역자를 말하며 전도사로 칭한다.	
① 감리회에서 설립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M.A.) 또는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다만, 미주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받은 이는 미주지역에 국한하여 목회를 할 수 있다.**~~	① 감리회에서 설립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헨리아펜젤러대학교**의 대학원(M.A.) 또는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개정>**	① 준회원 대상학교에 헨리아펜젤러대학교을 추가하고 국내에서도 목회할 수 있도록 단서를 삭제함
② 연세대학교 대학원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는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연세대학교 대학원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는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신학석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학기 중 감리회 필수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②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과 감리교신학대학교는 학점 교류 협정 관계이므로 서로 학기 중 과목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

현행	개정안	비고
【276】 제76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⑧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제4호를 제외한 해당자는**~~ 1년간 서리로 사역한 후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다. 1.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2.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 수련목회자와 학원수련선교사 3. 수련선교사(선교국 선교사 인준자) 4. 군종사관후보생(선발고사 합격자)	【276】 제76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⑧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이 중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감리사의 파송을 **받고** 1년간 서리로 사역한 후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다.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다. <개정>** 1.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2.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 수련목회자와 학원수련선교사 3. 수련선교사(선교국 선교사 인준자) 4. 군종사관후보생(선발고사 합격자)	군종사관후보생은 신학대학원 졸업 후 준회원 허입
【1804】 제4조(진급과정) 구역담임 교역자, 수련목회자, 군종사관후보생, 수련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 ③ 군종사관후보생은 서리파송을 받은 후 당해연도 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국외선교사**로 파송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는다.	**【1828】 제28조**(진급과정) 구역담임 교역자, 수련목회자, 군종사관후보생, 수련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 ③ 군종사관후보생은 서리파송을 받은 후 당해연도 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정회원에 허입된다.** **세계선교사**로 파송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는다. **<개정>**	과정법(관련조항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283】 제8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이 회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생략> ②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인준하며 연회 현직 감독이 이사장이나 원장의 직임을 수행하며 연회에서 파송하는 당연직 이사(연회 총무 포함)가 이사 정수의 2분의 1이상 되는 신학원을 졸업한 이로 다음에 해당된 이 1. <생략> 2. 교회개척 후 입교인이 30명 이상 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입증되었을 때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교회 모든 재산을 편입한 경우 협동회원 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다.	【283】 제8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이 회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인준하며 연회 현직 감독이 이사장이나 원장의 직임을 수행하며 연회에서 파송하는 당연직 이사(연회 총무 포함)가 이사 정수의 2분의 1이상 되는 신학원을 졸업한 이로 다음에 해당된 이 1. <현행과 같음> 2. 교회개척 후 입교인이 30명 이상 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입증되었을 때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교회 모든 재산을 편입한 경우 협동회원 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의 재단편입이 불가 시에는 전세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협동회원 목사로서 안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 전세계약서 제출 시 협동회원 목사로 안수 가능토록 조건을 보완함.
【289】 제89조(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 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파송된 교역자가 파송기관에서 사직할 경우 사직과 동시에 기관 파송은 취소되며, 소속교회의 파송 또한 별도의 조치 없이 취소된다.** ④ <생략>	【289】 제89조(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 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거나 연회 제출 서류 미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감독은 기관파송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④ <현행과 같음>	③ 서류미비, 결격사유 발생 및 전임 사역하지 않을 시 기관파송 취소

현행	개정안	비고
【279】 제79조(목사안수) 목사로 안수 받을 이는 준회원 2년 과정을 마치고 연회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선교사**로 파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으며, 군종사관후보생은 담임목사와 감리사, 군선교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서리파송을 받은 후 지방회의 청원으로 당해 연도 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는다. <개정>	【279】 제79조(목사안수) 목사로 안수 받을 이는 준회원 2년 과정을 마치고 연회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계선교사**로 파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으며, 군종사관후보생은 담임목사와 감리사, 군선교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서리파송을 받은 후 지방회의 청원으로 당해 연도 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는다. **<개정>**	지난(2021년)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
【289】 제89조(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 ⑤ 교역자 선교사는 **국외선교사** 관리규정에 따라 감독이 파송하며, 선교지를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한 경우 진급을 보류한다.	【289】 제89조(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 ⑤ 교역자 선교사는 **세계선교사** 관리규정에 따라 감독이 파송하며, 선교지를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한 경우 진급을 보류한다. **<개정>**	
【621】 제121조(연회 사무완결의 절차) 연회는 다음 총문을 감독이 서기에게 묻고 이에 대해 서기가 답변함으로 사무를 완결한다. ② 준회원에 대하여 9. 금년에 **국외선교사**로 파송된 이가 누구입니까? 10. **국외선교사**로 파송되어 가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③ 정회원에 대하여 10. 금년에 **국외선교사**로 파송되어 간 이가 누구입니까? 11. **국외선교사**로 파송되어 가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621】 제121조(연회 사무완결의 절차) 연회는 다음 총문을 감독이 서기에게 묻고 이에 대해 서기가 답변함으로 사무를 완결한다. ② 준회원에 대하여 9. 금년에 **세계선교사**로 파송된 이가 누구입니까? **<개정>** 10. **세계선교사**로 파송되어 가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개정>** ③ 정회원에 대하여 10. 금년에 **세계선교사**로 파송되어 간 이가 누구입니까? **<개정>** 11. **세계선교사**로 파송되어 가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개정>**	의회법(관련조항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1292】 제12조(재직기간) ⑥ 교역자가 불가피한 사정(순교자 및 피랍자 포함)과 공상자일 경우에는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는 판정은 은급재단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외선교사** 관리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송된 선교사는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	【1292】 제12조(재직기간) ⑥ 교역자가 불가피한 사정(순교자 및 피랍자 포함)과 공상자일 경우에는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는 판정은 은급재단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계선교사** 관리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송된 선교사는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 **<개정>**	은급법(관련조항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292】 제92조(교역자의 은퇴) 교역자의 은퇴는 다음과 같다. ① ~ ② <생략> ③ 목회 중 사고로 인해 중증 장애가 발생하여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진단을 받은 이(**대학병원진단서** 첨부)는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공상 은퇴할 수 있다.	【292】 제92조(교역자의 은퇴) 교역자의 은퇴는 다음과 같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목회 중 사고로 인해 중증 장애가 발생하여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진단을 받은 이(**종합병원진단서** 첨부)는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공상 은퇴할 수 있다. **<개정>**	③ 대학병원진단서 → 종합병원진단서

현행	개정안	비고
【292】 제92조(교역자의 은퇴) ④ 연회 회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292】 제92조(교역자의 은퇴) ④ 연회 회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개정>**	자원은퇴 기준 개정 30년 재직 → 20년 재직
【120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0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교역자은급법(관련조항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② ‘은퇴’라 함은 연회 회원 교역자로서 70세가 된 다음 해 (연회 기준) 해당 연회에서 은퇴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이 된 이의 자원은퇴, **30년** 이상 재직한 이의 자원은퇴, 공상은퇴 등을 포함한다.	② ‘은퇴’라 함은 연회 회원 교역자로서 70세가 된 다음 해 (연회 기준) 해당 연회에서 은퇴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이 된 이의 자원은퇴, **20년** 이상 재직한 이의 자원은퇴, 공상은퇴 등을 포함한다. **<개정>**	
【1217】 제17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방법은 시행규정을 따른다. ④ **30년** 이상 연회 회원으로 재직하고 연회에서 자원은퇴하는 교역자는 재직기간만큼 은급금 혜택을 받되 65세부터 지급한다.	【1217】 제17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방법은 시행규정을 따른다. ④ **20년** 이상 연회 회원으로 재직하고 연회에서 자원은퇴하는 교역자는 재직기간만큼 은급금 혜택을 받되 65세부터 지급한다.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000】 제00조(전문직 협동목회자 양성과 자격) 전문직으로 재직하거나 은퇴한 자로 감리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M.div.)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협동목회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전문직 협동목사로 안수하고 각 연회에서 개체교회에 파송할 수 있으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신설> **① 법조인, 의료인, 전문대이상 전임교원, 3급이상 공무원, 각급학교 교장으로 은퇴한 자** **② 전문직 협동목사는 봉사직으로 하며, 각종 사례금 및 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전문직 협동목사 후보자는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연회에서 안수 받는다.**	전문직 협동목사의 도입 ③ 전문직 협동목사 안수 절차를 규정함

현행	개정안	비고
제 4 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제 4 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295】 제95조(감리사의 자격) 감리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③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한 교회로서 최근 2년간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정회원이 된 이후에 재판법에서 정직 이상이나 국가 형법(특별형법 포함)에 의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이**	【295】 제95조(감리사의 자격) 감리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③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최근 2년간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④ 정회원이 된 이후에 재판법에서 정직 이상이나 국가 형법(특별형법 포함)에 의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③ 제출시기 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더 중요하므로 삭제(선거법과 통일) ④ 기한 명시 (선거법과 통일)
【298】 제98조(감리사의 직무)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⑮ 감리사는 지방회 임원 중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시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⑯ 감리사는 모든 교회와 교역자가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은급부담금과 은급기여금을 납부하고 은급주일을 준수하도록 하며,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98】 제98조(감리사의 직무)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⑮ **<삭제>** **⑯ 감리사는 지방회에 속한 교회 교역자가 이임할 경우 직전 연도까지의 은급부담금, 기여금납입 여부를 사문하고 미납금이 있을 때 이임 결의를 보류한다. <신설>** ⑰ 감리사는 모든 교회와 교역자가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은급부담금과 은급기여금을 납부하고 은급주일을 준수하도록 하며,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⑮ 【504】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3항, 4항 신설에 따라 삭제 ⑯ 【1290】 제10조(지방회와 연회와의 관계) 5항 내용 추가

현행	개정안	비고
제 5 장 감독과 연회 본부 【308】 제108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⑨ 감독은 감리사 또는 연회 총무를 선출하지 못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사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총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도록 한다. 이 경우 보선된 감리사와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5 장 감독과 연회 본부** 【308】 제108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⑨ 감독은 연회 회기 중 감리사 선출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제97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사를 선출한다.** 총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도록 한다. 이 경우 보선된 감리사와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⑨ 상충된 내용 통일
【321】 제121조(연회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 연회에 봉사직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 1명을 둔다 연회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는 연회 총무를 도와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의 사업정책과 연회 본부의 사회 평신도사업 계획에 따라 해당 연회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회평신도사업에 대한 연구조사, 계획수립, 실천방안등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321】 제121조(연회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 연회에 봉사직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 1명을 둔다 연회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는 연회 총무를 도와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의 사업정책과 연회 본부의 사회 평신도사업 계획에 따라 해당 연회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회평신도사업에 대한 연구조사, 평신도 단체의 지원육성, 계획수립, 실천방안등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사회평신도부 총무의 업무 중 평신도 단체 지원 육성을 첨부하여 각 평신도 단체간 협력을 도모하여 평신도 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 9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제 3 절 본부 조직 【343】 제143조(본부의 부서) ① 본부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선교국 2. 교육국	**제 9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제 3 절 본부 조직 【343】 제143조(본부의 부서) ① 본부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3. 사회평신도국 4. 사무국 5. 행정기획실 ~~② 감리회 본부 구조개편을 위하여 2022년 3월 말까지 총회 실행부위원회 내에 본부 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한다. 본부 구조개편 내용 등 세부사항은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고 2024년 총회 때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000】 제000조(도서출판kmc) <신설> ① 감리회는 본부조직과 별도로 독립하여 도서출판 kmc를 설립하고 감리회 본부와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되 본부는 사무실 제공 외에 일체의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도서출판kmc는 설립, 운영, 이사회 설치, 사장 선임 및 직원 임명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도서출판kmc 설립 근거 신설 및 독립채산으로 운영
【345】 제145조(선교국의 직무) 선교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⑯ <생략> ⑰ 이슬람 선교 대책 **및 이단대책에 관한 업무**	【345】 제145조(선교국의 직무) 선교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⑯ <현행과 같음> ⑰ 이슬람 선교 대책**에 관한 업무 <개정>**	⑰ 이단대책에 관한 업무를 교육국 직무로 이관
【347】 제147조(교육국의 직무) 교육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⑩ <생략> **⑪ 신학정책에 관한 업무** ⑫ ~ ⑬ <생략>	【347】 제147조(교육국의 직무) 교육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에 관한 업무** ⑫ ~ ⑬ <현행과 같음>	⑪ 이단대책에 관한 업무를 교육국 직무에 포함

현행	개정안	비고
⑭ 목회자 배우자를 위한 신학교육원 운영에 관한 업무 ⑮ ~ ⑯ <생략> **⑰ 대안교육에 대한 연구 및 산돌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	**⑭ 목회자 배우자 연수 교육에 관한 업무** ⑮ ~ ⑯ <현행과 같음> **⑰ 교회의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업무 <개정>**	⑭ '신학교육원'은 삭제하고 사모를 위한 연수 교육은 계속한다. ⑰ 교회마다 주중 유휴 시설을 이용한 교회의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책 개발 담당
【354】 제154조(**총무**의 직무) **각 국 총무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독회장을 보좌하여 장정에 규정된 **각 국**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한 정책 및 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③ **해당국**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직원의 추천 및 해임을 건의한다.	【354】 제154조(**총무, 실장**의 직무) **각 국, 실의 총무 및 실장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① 감독회장을 보좌하여 장정에 규정된 **각 국, 실**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② 총회에서 의결한 정책 및 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③ **해당 국, 실**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④ 직원의 추천 및 해임을 건의한다.	실장 추가
제 4 절 본부 각 국 위원회 및 재단이사회 【360】 제160조(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각 국 위원회의 조직 1.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대표 1명과 평신도 대표 1명 2. 감독회의에서 호선된 1명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해당 국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무를 통하여 보고를 받도록 한다. <개정> 3. 총무가 제청하여 국 위원회에서 인준한 전문위원 3명	제 4 절 본부 각 국 위원회 및 재단이사회 【360】 제160조(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각 국 위원회의 조직 1.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은 해당 위원회에서 발언권만 보유한다. <개정> 4. 각 총무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을 보유한다. <개정>		
	5. **연회 선출위원에 여성 위원이 없을 경우 감독회장이 교역자 1명과 평신도 1명의 여성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신설>**	5. 각 국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 기회 확대
② 각 재단 이사회의 조직	② 각 재단 이사회의 조직	
1. 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 : 감독회장,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대표 1명과 평신도 대표 1명	1. ~ 3. <현행과 같음>	
2. 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 : 감독회장,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대표 1명과 평신도 대표 1명		
3. 장학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11명과 교육국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4. 사회복지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교역자·평신도 대표 7명과 외부 이사 3명으로 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개정)	4. 사회복지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평신도 대표 7명과 외부 이사 3명으로 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4호. 1~3호와 문구통일
5. 태화복지재단이사회 : 이 법인의 이사는 11명으로 하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며, 여선교회전국연합회가 추천한 1명,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3명, 사업기관 대표 2명,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및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중 대표 1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추천 이사 3명으로 구성한다.	5. 태화복지재단이사회 : 이 법인의 이사는 11명으로 하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며, 여선교회전국연합회가 추천한 1명,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에서 선출한** 3명, 사업기관 대표 2명,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및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중 대표 1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추천 이사 3명으로 구성한다.	5호. 1~3호와 문구통일

현행	개정안	비고
【362】 제162조(감리회 본부 임직원의 정원) ① 감리회 본부의 임직원의 정원은 **2025년까지 68명(무기계약직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서별 정원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이 정한다.	【362】 제162조(감리회 본부 임직원의 정원) ① 감리회 본부의 임직원의 정원은 **2028년까지 55명(무기계약직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② <현행과 같음>	① 감리회 본부 정원 축소

현행	개정안	비고
제 5 절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365】 제165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정관개정)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제166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에 규정한 감리회 소속 법인의 정관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개정한다. ① 정관 개정안은 당해 법인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발의된 정관개정안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법의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법인의 해산이나 합병, 이사선임 등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시급히 정관을 개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의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경우, 총회 실행부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입법의회에서 정관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제 5 절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365】 제165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정관개정)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제166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에 규정한 감리회 소속 법인의 정관 **개정은 해당 법인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② ~ ③ <삭제>**	교리와 장정이 정하고 있는 정관개정 절차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절차가 상이하여 개정함

현행	개정안	비고
~~**감독회장은 30일 이내에 이 사실을 당해 법인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법인 이사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당 정관 개정안을 입법의회가 의결한 대로 개정한다.**~~		
【650】 제150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 ⑨ <생략> ⑩ 총회가 닫힌 후 선출된 자치기관의 회장 인준	【650】 제150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총회가 닫힌 후 선출된 자치기관의 회장 인준 **⑪ 총회 및 감리회 본부 산하 위원회의 규정 인준 <신설>**	의회법(관련조항 개정) ⑪ 규정 인준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제 7 절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	제 7 절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	
【373】 제173조(특별위원회의 설치) 감리회 본부에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성직윤리위원회 1. 교역자 윤리 및 성직 등의 문제를 위해 성직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감독회장이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각 연회에서 교역자 1명**씩 선정하여** 구성한다. 3. 성직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73】 제173조(특별위원회의 설치) 감리회 본부에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신앙과** 성직윤리위원회 **<개정>** 1. 교역자 윤리 및 성직 등의 문제를 위해 **신앙과** 성직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 감독회장이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각 연회에서 교역자 1명, **감리회 소속 3개 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 각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3. **신앙과** 성직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④ 위원회 명칭 변경 2. 예배서(예문) 연구·제정 직무 추가에 따른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⑤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1. 미자립교회대책과 교회실태조사 업무를 위해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연회에서 선임한 20명(교역자 10명, 평신도 10명)과 호남특별연회에서 1명**,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3.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⑤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1. 미자립교회대책과 교회실태조사 업무를 위해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 **각 연회 감독이 추천한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3.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다른 항과 문구 통일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대외협력위원회 1. 감리교회의 대외 및 국제협력관계를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 2. 대외협력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⑦ 대외협력위원회 1. 감리교회의 대외 및 국제협력관계를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 2. 대외협력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 다른 항과 문구 통일

제 4 편 의회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504】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504】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③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지방회, 연회, 총회의 회원권이 없다. <신설>	회원권과 연회, 총회 위원 및 이사의 자격 기준 개정
	④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명의로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연회·총회·본부의 각 위원회 위원 및 재단 이사회 이사와 총회대표가 될 수 없다. <신설>	
③ 각 의회에서 선출된 위원 및 이사가 불법으로 선출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 책임자는 직권으로 원인 무효시킬 수 있다. <개정>	⑤ <현행과 같음>	항 순연
④ 각 의회의 위원회나 이사회의 위원 및 이사는 자기 및 가족과 관계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나 이사회의 토론 및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현행과 같음>	
제 4 장 지방회	**제 4 장 지방회**	
제 1 절 지방회	제 1 절 지방회	
【544】 제44조(지방회의 조직) 지방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544】 제44조(지방회의 조직) 지방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① 해당 지방회에 소속한 연회 회원(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인 교역자 ② 지방회 교회에 파송 받은 장로 ③ 서리담임자, 전도사(수련목회자, 군목 및 선교사 후보, 기관목회자) ④ 각 구역 권사 대표, 선교부 대표, 교육부 대표, 사회봉사부 대표, 예배부 대표, 문화부 대표, 재무부 대표, 관리부 대표, 남선교회 대표, 여선교회 대표, 청장년선교회 대표, 청년회 대표, 교회학교 대표 각 1명 ⑤ 남선교회지방회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지방회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지방회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지방회연합회 회장, 청년회지방회연합회 회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교회 경제법에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⑥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개정>**	⑥ 문구통일
⑦ 각 구역은 5명 이상의 대표를 지방회에 보낸다.	⑦ 각 구역은 5명 이상의 대표를 지방회에 보낸다.	
~~⑧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하지 않은 개체교회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⑧ **<삭제>**	⑧【504】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에 3항, 4항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조항 신설
⑨ 지방회에 소속한 교회의 평신도선교사는 지방회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⑨ <현행과 같음>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③ <생략>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④ 교회의 모든 부동산이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되지 아니한 구역회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④ <삭제>	④【504】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에 3항, 4항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조항 신설
제 8 장 연 회 제 1 절 연 회	**제 8 장 연 회** 제 1 절 연 회	
【588】제88조(연회의 조직) ①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담임자(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나 소속교역자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588】제88조(연회의 조직) ①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개정>** ③ <현행과 같음>	② 문구통일
【595】제95조(연회의 직무) ⑭ 연회는 다음과 같이 연회 안의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1. 개체교회 예배당, 주택, 임대차와 기타 부대시설이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595】제95조(연회의 직무) ⑭ 연회는 다음과 같이 연회 안의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1. 개체교회 예배당, 주택, 임대차와 기타 부대시설이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2.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의 연회 대표에게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3. 연회는 교회사업을 위하여 기부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삭제> 2. 연회는 교회사업을 위하여 기부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2.【504】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에 3항, 4항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조항 신설
제 9 장 총 회 제 1 절 총 회 【623】제123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⑤ 총회 대표는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 및 부담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	**제 9 장 총 회** 제 1 절 총 회 【623】제123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⑦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명의로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총회대표가 될 수 없다. <개정>**	
【886】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①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886】제2조**(교회 부동산의 소유권) <개정>** ①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교회 경제법(관련조항 개정) ①【504】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에 3항, 4항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조항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② 교회의 모든 부동산의 관리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 관계교회 관리부에 위탁하여 관리케 하며, 교회 분규로 인하여 교회 재산의 관리권 다툼이 발생한 때에 감리회를 이탈한 측에서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505】 제5조(자치기관의 설치) 각 의회(지방회, 연회, 총회) 안에 선교, 교육, 봉사, 친교의 사업을 위하여 교회학교연합회, 청년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여선교회연합회, 남선교회연합회를 설치하되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운영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자치기관의 회장은 해당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05】 제5조(자치기관의 설치) 각 의회(지방회, 연회, 총회)에 다음과 같이 자치기관을 설치한다. ① 선교, 교육, 봉사, 친교의 사업을 위하여 남선교회연합회, 여선교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청년회연합회, 교회학교연합회를 설치하되,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의 지도를 받는다. ② 각 자치기관의 운영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③ 각 자치기관의 회장은 해당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자치기관의 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각종 부담금을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 성실하게 완납하여야 한다. <신설>** **⑤ 자치기관(연회, 총회)의 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① 조 내용을 항으로 분리 자치기관 나열 순서 통일 ②,③ 조 내용을 항으로 분리 ④,⑤ 자치기관장의 자격 명시

현행	개정안	비고
제 2 장 당 회 제 1 절 당 회	**제 2 장 당 회** 제 1 절 당 회	
【519】 제19조(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한다. **~~다만, 입교인 정리는 정기 당회에서만 할 수 있다.~~**	【519】 제19조(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한다. **<개정>**	① 입교인 정리는 임시, 정기 당회 모두 가능
제 4 장 지방회 제 1 절 지방회	**제 4 장 지방회** 제 1 절 지방회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연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 연회 남·여·청장년선교회·청년회·교회학교연합회장 및 지방회 **여선교회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에 따라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와 총회의 대표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하며, 15%는 연령이 50세 미만인 이 중에서 선출한다.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 집사를 임명된** 연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 연회 **및 지방회 남·여·청장년선교회·청년회·교회학교연합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에 따라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와 총회의 대표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하며, 15%는 연령이 50세 미만인 이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⑬ 권사가 없을 시 집사 선출도 가능하게 개정 1. 지방회 각 선교회장을 당연직으로 추가

현행	개정안	비고
제 8 장 연 회 제 1 절 연 회	**제 8 장 연 회** 제 1 절 연 회	
【587】 제87조(연회) ① 행정구역, 교회분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에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호남특별연회, 미주자치연회, 서부선교연회를 둔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연회를 5~6개 연회로 재편한다. 다만, 연회 명칭, 경계 조정 등 세부사항은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되 2026년 총회부터 시행한다.	【587】 제87조(연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규정된 연회를 5~6개 연회로 재편한다. 다만, 연회 명칭, 경계 조정 등 세부사항은 **2025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되 2026년 총회부터 시행한다. **<개정>**	
【594】 제94조(연회서기) 연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서기 각 1명을 선출하여** 2년간 감독의 연회 사무처리를 보좌하게 한다.	【594】 제94조(연회서기) 연회는 다음과 같이 **정서기는 교역자, 부서기 평신도로 각 1명을 선출하여** 2년간 감독의 연회 사무처리를 보좌하게 한다. **<개정>**	총회와 통일

현행	개정안	비고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⑧ 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소지자 등) 2명으로 구성하되 법전문인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편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⑧ 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12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소지자 등) 2명으로 구성하되 법전문인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편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감독지명위원 1명 → 2명 총 14명, 한 반 7명 편성

현행	개정안	비고
【1492】 제9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소지자 등) 2명으로 구성하되, 법전문인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하고 위원 중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6명 중에서 대치한다. <개정>	【1492】 제9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소지자 등) 2명으로 구성하되, 법전문인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하고 위원 중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6명 중에서 대치한다.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⑫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리회 본부 각 국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 각 국 위원, 재단이사 등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연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과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이사로 1명을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 중에 윤번제로 선출한다. 다만, **호남특별연회와** 감독회장이 소속된 연회는 제외한다. 7 ~ 17. <생략>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⑫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리회 본부 각 국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여 **파송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6. 연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과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이사로 1명을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 중에 윤번제로 선출한다. 다만, 감독회장이 소속된 연회는 제외한다. **<개정>** 7 ~ 17. <현행과 같음>	6. 호남특별연회 삭제 사회복지재단 : 7명 선출 태화복지재단 : 3명 선출 10개 연회 1명씩 선출 가능

현행	개정안	비고
~~18. 연회는 본부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으로 2명(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개정>~~	18. <삭제>	18. 본부특별위원회 연회의 직무 아님
	18.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감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이동>	18. 19항에서 위원 선출하는 항으로 이동
⑲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감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⑲ <이동>	⑲ 12항 18호로 이동
⑳ 총회의 모든 선출직 위원과 이사는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당연직과 평신도단체의 선출직 대표와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은 예외로 한다.	⑳ 총회의 모든 선출직 위원과 이사는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당연직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제 9 장 총 회	**제 9 장 총 회**	
제 1 절 총 회	제 1 절 총 회	
【623】 제123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총회는 교역자 대표와 평신도 대표 1,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하며, 총회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623】 제123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총회는 교역자 대표와 평신도 대표 1,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하며, 총회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교역자 직능대표 : 현직 감독회장과 감독 및 당선자, 감리사	① 교역자 직능대표 : 현직 감독회장과 감독 및 당선자, 감리사	
② 평신도 직능대표 :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 각 전국연합회장, 연회 실행위원	② 평신도 직능대표 :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 각 전국연합회장, 연회 실행위원	
	③ 감리회 본부 임원 및 도서출판kmc 사장은 총회 직능대표가 된다. <이동>	③ 총회 조직을 쉽게 볼 수 있도록 11항에서 이동

현행	개정안	비고
③ 선출직 교역자 대표 : 정회원 수의 비율로 연회에 배정하여 연급, 전문성, **성별을**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한다.	④ 선출직 교역자 대표 : 정회원 수의 비율로 연회에 배정하여 연급, 전문성, **지방회를**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④ 5항 선출직 평신도 대표와 동일하게 수정, '성별'은 6항에 적용
④ 선출직 평신도 대표 : 정회원과 동수로 연회에 배정하여 임명된 연수와 전문성, 지방회를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하되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에 의거하여 15%는 여성 대표로 한다.**	⑤ 선출직 평신도 대표 : 정회원과 동수로 연회에 배정하여 임명된 연수와 전문성, 지방회를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⑥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5%는 여성으로, 15%는 50세 미만 이로 선출한다. <개정>**	⑤ 교역자, 평신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6항으로 분리
⑤	⑦	⑦ 회원권 부분(p.74)에 있음
⑥ 총회 대표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⑧ 총회 대표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⑧ 직책으로 인해 당연하게 맡는 경우는 제외
⑦ 미파자 및 휴직자는 총회 대표가 될 수 없다.	⑨ 미파자 및 휴직자는 총회 대표가 될 수 없다.	항 순연
⑧ 총회 대표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차기 총회 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이는 제외한다.	⑩ 총회 대표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차기 총회 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이는 제외한다.	
⑨ 각 연회별로 교역자, 평신도 각 10명씩을 총회 대표 후보로 선출한다.	⑪ 각 연회별로 교역자, 평신도 각 10명씩을 총회 대표 후보로 선출한다.	
⑩ 총회 대표는 다른 연회로 이명할 경우 총회 대표권을 상실한다.	⑫ 총회 대표는 다른 연회로 이명할 경우 총회 대표권을 상실한다.	
⑪ 감리회 본부 임원 및 도서출판kmc 사장은 총회 직능대표가 된다. <신설>	**⑪ <이동>**	⑪ 3항으로 이동

현행	개정안	비고
제 9 장 총 회 제 1 절 총 회	**제 9 장 총 회** 제 1 절 총 회	
【629】 제129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 ⑳ <생략> ㉑ 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 조직 : 총회는 감리회 본부의 회계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된 감사들로 감사위원회를 조직한다. 감사는 **10개**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으~~**로 조직한다.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은 감사의 연속성을 위해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	【629】 제129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 ⑳ <현행과 같음> ㉑ 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 조직 : 총회는 감리회 본부의 회계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된 감사들로 감사위원회를 조직한다. 감사는 **11개**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와 평신도로** 조직한다.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은 감사의 연속성을 위해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 **다만, 연회 총무는 감사로 선출될 수 없다. <개정>**	본부 감사위원회와 장정개정위원회에 연회 총무 선출 금지 명시 ㉑ 감사업무의 독립성 보장
제 2 절 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제 2 절 입법의회 분과위원회	
【647】 제147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입법의회는 각 분야별 연구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조직한다. ⑧ 장정개정위원회 :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입법의회에 상정할 법안 확정 및 장정편찬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정·부서기를 둔다. 장정개정의 연속성을 위해 8명(교역자 4명, 평신도 4명)은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	【647】 제147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입법의회는 각 분야별 연구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조직한다. ⑧ 장정개정위원회 :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입법의회에 상정할 법안 확정 및 장정편찬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정·부서기를 둔다. 장정개정의 연속성을 위해 8명(교역자 4명, 평신도 4명)은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	

현행	개정안	비고
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1. 선출직 위원 : 연회별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1명 2. 임명직 위원 :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	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 **다만, 연회 총무는 장정개정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개정>** 1. 선출직 위원 : 연회별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1명 2. 임명직 위원 :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2 장 총회 특별위원회 제 5 절 장정유권해석위원회 【667】 제167조(조직)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과 ~~**호남특별연회 1명**~~, 감독회장이 감독회의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법조인 3명으로 조직한다. 다만, 법조인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집사 이상이어야 한다.	**제 12 장 총회 특별위원회** 제 5 절 장정유권해석위원회 【667】 제167조(조직)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과 감독회장이 감독회의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법조인 3명으로 조직한다. 다만, 법조인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집사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호남특별연회를 타 연회와 통일
부 록 : 의사진행 규칙 **제 1 장 개의(開議)·산회·폐회** 【670】 제1조(개의) ①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의한다.	**부 록 : 의사진행 규칙** **제 1 장 개의(開議)·산회·폐회** 【670】 제1조(개의) ①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의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1. ~ 2. <생략> 3.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총회 실행부위원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의 효력을 인정한다. **<개정>** **4. 입교인 500명 이상인 개체교회의 구역회에서는 구역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3. 위임장 효력인정 범위 확대 및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명시 4. 구역회 개의 시 위임장 효력 인정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① ~ ② <생략> ③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총회 실행부위원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는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서면으로 찬반의사를 사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입교인 500명 이상인 개체교회의 구역회에서는 구역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는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서면으로 찬반의사를 사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③ 위임장 효력인정 범위 확대 및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명시 ④ 구역회 표결 시 위임장 효력 인정

제 5 편 교회 경제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8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부담금 : 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 본부, 연회 및 지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회 본부 부담금 : 감리회 본부 부담금(이하 '본부 부담금'이라 한다.)은 감리회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1%**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감리회 본부는 수납된 본부 부담금 중 20% 범위 내에서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 본부 지원비와 국내 지역교회를 갖춘 연회의 사업비를 계상 배당해야 한다. 다만, 연회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 ~ 3. <생략> 4. 은급 부담금 : 은급 부담금은 교역자은급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2%**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8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부담금 : 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 본부, 연회 및 지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회 본부 부담금 : 감리회 본부 부담금(이하 '본부 부담금'이라 한다.)은 감리회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0.8%**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감리회 본부는 수납된 본부 부담금 중 20% 범위 내에서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 본부 지원비와 국내 지역교회를 갖춘 연회의 사업비를 계상 배당해야 한다. 다만, 연회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 ~ 3. <현행과 같음> 4. 은급 부담금 : 은급 부담금은 교역자은급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2.2%**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1205】 제5조(기금의 조성 의무) 5항 "본부 부담금 중에서 20%를 은급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 삭제하고 본부 부담금 1% → 0.8% 은급 부담금 2% → 2.2%

현행	개정안	비고
【1205】 제5조(기금의 조성의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적용범위) 제1항의 교역자와 개체교회는 아래의 금원을 은급재단이 지정하는 곳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2%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척교회의 경우 결산 1천만 원 미만인 교회는 3년 동안 교회은급부담금을 면제한다. 교회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감리회 본부는 모든 교회가 납부하는 본부 부담금 중에서 20%를 은급재단의 은급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1205】 제5조(기금의 조성의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적용범위) 제1항의 교역자와 개체교회는 아래의 금원을 은급재단이 지정하는 곳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2.2%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척교회의 경우 결산 1천만 원 미만인 교회는 3년 동안 교회은급부담금을 면제한다. 교회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⑤ <삭제>	교역자은급법(관련조항 개정)
【1283】 제3조(기금조성) 교역자은급법 제5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금원(金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③ 교회은급부담금 1.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2%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척교회의 경우 결산 1천만 원 미만인 교회는 3년 동안 교회은급부담금을 면제한다. 교회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1283】 제3조(기금조성) 교역자은급법 제5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금원(金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③ 교회은급부담금 1.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2.2%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척교회의 경우 결산 1천만 원 미만인 교회는 3년 동안 교회은급부담금을 면제한다. 교회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교역자은급 시행규정 (관련조항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2 장 감리회 본부 건물 수익금	**제 2 장 감리회 본부 건물 임대보증금 및 수익금 <개정>**	
【805】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감리회관**의 **수익금은 그 70%를 임대보증금의 환급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의 70%가 초과 된 후에는** 개척선교비 및 **감리회 본부 지원비**와 교역자양성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회의의 협의로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유지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다만,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 결의에 찬동한 이사 및 위원이 변제의 책임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805】 제5조 (**감리회 건물 임대보증금 및** 수익금) **감리회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환급을 위하여 100%** 적립하여야 하며, **임대수익금 30%는** 개척선교비, 교역자양성비 및 감리회 본부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회의의 협의로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유지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다만,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 결의에 찬동한 이사 및 위원이 변제의 책임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보증금 70%는 잘못된 법령이므로 보증금의 전액 환급을 위해 100%로 바로 잡음
제 5 장 고정자산 보존관리	**제 5 장 고정자산 보존관리**	
【818】 제18조(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임대, 처분 등) ① 감리회의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그리고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 단체 등에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은 「교리와 장정」과 각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818】 제18조(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임대, 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감리교회의 개체교회·기관·단체 등이 취득하여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 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및 기타 과징금을 미납하여 체납사항이 발생하면 재산관리자는 즉시 유지재단이사회에 보고하고, 유지재단이사	② 세금 및 과징금 발생에 따른 제재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회의 결의에 따라 공매처분 및 관리권 회수 등 행정처분할 수 있다. 유지재단이사장은 담임교역자는 해당 연회 감독에게, 장로는 해당 지방회 감리사에게 직임정지를 요청한다. 해당교회 교역자와 장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신설>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 제 3 장 이사회 【855】 제15조(부의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재산의 관리, **처분**, 기채, 교환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 제 3 장 이사회 【855】 제15조(부의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재산의 관리, **매입, 매도**, 교환, **대여금**, 기채, **예치금** <개정>	① 현 사무국 시행심의사항 보완(업무의 합법화)
【856】 제16조(정족수) 이사회의 정족수는 아래와 같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권리포기, 의무부담, 정관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본재산의 **처분**, 교환, 및 기채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부기본재산의 **처분**, 교환 및 기채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56】 제16조(정족수) 이사회의 정족수는 아래와 같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재산의 **매입, 매도**, 교환, **대여금**, 기채, **예치금 사용승인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부기본재산의 **매입, 매도**, 교환, 및 기채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여금, 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 포함) 사용승인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③ 처분 : 매도만 강조되고 매입이 없어서 매입추가 예치금 사용승인 추가

현행	개정안	비고
제 4 장 재정	**제 4 장 재정**	
【859】 제19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은 필요에 따라 수익용, 종교용, 교육용, 분묘지용, 봉사용 등 사업목적에 따라 분류 사용한다. ②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정관개정)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859】 제19조(재산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재산을 **매입**, 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정관개정)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처분에 매입을 보완
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896】 제12조(재단법인 소유 부동산 <개체교회>관리) 재단법인 소유부동산을 개체교회에서 관리 중에 발생한 민사소송 사건은 다음 각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에 응소할 경우에는 본 재단에 '소송대리위임 신청서'를 당해 소송 부동산의 교회담임자와 관리부장 및 재무부장 명의로 제출하고 재단의 허락을 받아 제소 또는 응소하여야 한다. ② 첨부서류 1. 소송 물건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2. 소송 사유서 3. 소송 비용 충당계획서 4. 그 밖에 소송에 필요한 서류	【896】 제12조(재단법인 소유 부동산 <개체교회>관리 **및 세금연체 시 추징처리**) 재단법인 소유부동산을 개체교회에서 관리 중에 발생한 민사소송 사건 **및 세금연체 시 추징처리**는 다음 각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③ 소송으로 발생되는 비용 전액을 당해 교회 및 기관 또는 연대보증인이 부담한다.	**④ 감리회의 개체교회·기관·단체 등이 취득하여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는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및 기타 과징금을 미납하여 체납사항이 발생하면 재산관리자는 즉시 유지재단이사회에 보고하고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유지재단이사장은 담임교역자는 해당 연회 감독에게, 장로는 해당 지방회 감리사에게 직임정지를 요청한다. 해당교회 교역자와 장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신설>**	④ 세금 및 과징금 발생에 따른 제재 규정 신설
3.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3.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900】 제2조(구성) ① 위원은 **23명**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각 연회에서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과 호남특별연회 1명~~**을 선임한다. ③ 감독회장은 직책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감독회의에서 선출된 감독이 한다.	【900】 제2조(구성) ① 위원은 **24명**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 연회에서 위원 선임시 3분의 1은 연임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② 위원은 각 연회에서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을 선임한다. **<개정>** ③ <현행과 같음>	① 제34회 본부기본재산관리위원회 11회 및 392회 유지재단이사회 승인
【903】 제5조(수익금 처분) 본부기본재산에서 산출되는 수익금은 감리회 본부 **지원비**와 교역자양성비 및 개척선교비와 재단법인 사업비로 지출한다.	【903】 제5조(수익금 처분) 본부기본재산에서 산출되는 수익금은 감리회 본부 **고유목적사업비**와 교역자양성비 및 개척선교비와 재단법인 사업비로 지출한다. **<개정>**	

제 6 편 교역자은급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4 장 은급금의 급여	**제 4 장 은급금의 급여**	
【1217】 제17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방법은 시행규정을 따른다. ①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은급기여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 ② 교역자의 재직기간 계산은 소속교회가 납부한 교회은급부담금~~의 총 연수(1984년 이후)를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되 나머지 달수가 6개월 이상일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한다. ~~다만,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재허입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1217】 제17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방법은 시행규정을 따른다.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역자의 재직기간 계산은 소속교회가 납부한 교회은급부담금으로 계산하되 나머지 달수가 6개월 이상일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한다. **<개정>**	재직기간은 소속교회가 교회은급부담금을 납부한 총 연수로 계산함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재허입 연도부터가 아닌 퇴회 기간만 제외하고 계산함
2.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 시행규정 **제 3 장 은급금 급여**	**2.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 시행규정** **제 3 장 은급금 급여**	
【1292】 제12조(재직기간) ①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은급기여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 다만,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퇴회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② 교역자의 재직기간 계산은 소속교회가 납부한 교회은급부담금~~의 총 연수(1984년 이후)를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되 나머지 달수가 6개월 이상일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한다. ~~다만,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재허입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1292】 제12조(재직기간) ①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은급기여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 다만,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퇴회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② 교역자의 재직기간 계산은 소속교회가 납부한 교회은급부담금으로 계산하되 나머지 달수가 6개월 이상일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한다.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⑪ 1983년 이전의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합산한다. 1. 정회원과 준회원의 재직기간은 연회 준회원 또는 정회원으로 허입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2. 협동회원의 재직기간은 연회에서 본처목사로 안수를 받은 연도부터 계산한다. 다만, 협동회원 전도사인 경우는 1975년부터 계산한다. ~~**3. 재허입교역자는 재허입부터 계산하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⑪ 1983년 이전의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합산한다. 1. 정회원과 준회원의 재직기간은 연회 준회원 또는 정회원으로 허입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2. 협동회원의 재직기간은 연회에서 본처목사로 안수를 받은 연도부터 계산한다. 다만, 협동회원 전도사인 경우는 1975년부터 계산한다. **3. <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제 5 장 수납과 지급방법	**제 5 장 수납과 지급방법**	
【1220】 제20조(납입방법) 제5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허입은급기여금', '교역자은급기여금' 및 '교회은급부담금'은 다음 방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① <생략> ② 교역자은급기여금 1.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교역자은급기여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	【1220】 제20조(납입방법) 제5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허입은급기여금', '교역자은급기여금' 및 '교회은급부담금'은 다음 방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역자은급기여금 1.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교역자은급기여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교역자의 재직기간이 40년이 경과된 이는 은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개정>**	1. 재직기간 40년만 지급

현행	개정안	비고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제 3 장 이사회** 【1253】 제14조(소집) ① <생략>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실시하되, 상반기는 4월에 하반기는 **11월**에 소집한다. ③ ~ ④ <생략>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제 3 장 이사회** 【1253】 제14조(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실시하되, 상반기는 4월에 하반기는 **10월**에 소집한다. **<개정>** ③ ~ ④ <현행과 같음>	② 이사들의 임기를 총회 회기에 맞추기 위함

제 7 편 재판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 장 일반 재판법 제 1 절 총 칙	**제 1 장 일반 재판법** 제 1 절 총 칙	
【1403】 제3조(범과의종류) 일반 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⑫ <생략> ⑬ 부절적한 결혼 또는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를 하였을 때 ⑭ ~ ⑰ <생략> ⑱ 후보자나 그 가족 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유용하였을 때 <신설>	【1403】 제3조(범과의종류) 일반 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부절적한 결혼 또는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 성폭력, **성추행 등** 유사 성행위를 하였을 때와 **상하관계를 이용한 부적절한 성관계가 드러났을 때 <개정>** ⑭ ~ ⑰ <현행과 같음> ⑱ <현행과 같음> **⑲ 감리회 재판법이나 사회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 그 기간에도 직무를 수행하였을 때와 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를 초청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을 때 <신설>**	⑬ 성추행 추가 ⑲ 직무집행 정지 위반에 관한 범과 신설
【1404】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404】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⑨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가 국내교회가 설립하여 봉헌하고 지원하는 해외 소재 개척교회를 사전에 설립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 교회와 부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현행	개정안	비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선교비를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기망행위로 사취를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신설>	
제 2 절 고소·고발 및 심사회부 【1413】 제13조(조정회부 및 심사회부) <개정> ①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당 의회의 장은 그 사건을 14일 내에 화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화해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의회의 장은 조정 불성립 통지를 받은 즉시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제 2 절 고소·고발 및 심사회부 【1413】 제13조(조정회부 및 심사회부) ①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당 의회의 장은 그 사건을 14일 내에 화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화해조정결정은 고소·고발장을 화해조정위원회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③ 화해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의회의 장은 조정 불성립 통지를 받은 즉시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1496】 제13조(화해조정) 1항과 통일
제 3 절 심사 【1425】 제25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심사위원 **임명권자**가 분명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고소인, 고발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재심사는 반을 교체하여 심사한다. <개정>	제 3 절 심사 【1425】 제25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각 의회의 행정책임자는** 분명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고소인, 고발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재심사는 반을 교체하여 심사한다. **<개정>**	
【1426】 제26조(심사기록의 송달) 재심사가 허락된 경우에 1심 심사위원장은 14일 이내에 심사서류 일체를 해당 의회의 장을 경유하여 새로 심사하는 **심사위원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1426】 제26조(심사기록의 송달) 재심사가 허락된 경우에 1심 심사위원장은 14일 이내에 심사서류 일체를 해당 의회의 장을 경유하여 새로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 송달해야 한다.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4 절 재 판	제 4 절 재 판	
【1430】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430】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④ 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④ 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회 심사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당부재판을 신청한 경우, 감독회장은 총회 재판위원회 위원 이외의 법조인 3명을 지명하여 담당하게 한다. <개정>**	④【1430】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5항의 다만 조항 삽입
⑤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조인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회 심사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당부 재판을 신청한 경우, 감독회장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위원 이외의 법조인 3명을 지명하여 담당하게 한다. <개정>	⑤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조인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회 심사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당부 재판을 신청한 경우, 감독회장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위원 이외의 법조인 3명을 지명하여 담당하게 한다. **<개정>**	⑤ 연회의 직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지방회, 연회, 총회의 재판위원회는 두 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순서대로 해당 재판위원회가 재판하게 한다. 다만, 당사자와 동일 의회 소속 위원이 없는 반에 배정한다. <신설>**	⑩【1414】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5항과 통일
⑩ 연회 이상의 재판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⑪ <현행과 같음>	항 순연

현행	개정안	비고
⑪ 감독 및 감독회장은 연회 회원, 총회 회원이 아닌 법전문인 또는 법조인을 연회 재판위원, 총회 재판위원, 총회 특별재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⑫ <현행과 같음>	
【1434】 제34조(재판)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⑤ 재판위원회가 재판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제척되며 **재구성된 재판위원회는** 그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⑥ ~ ⑦ <생략>	【1434】 제34조(재판)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⑤ 재판위원회가 재판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제척되며, **반을 바꾸어 재판을 진행한다. 당해 심사기록을 송부받은** 재판위원회는 그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개정>** ⑥ ~ ⑦ <현행과 같음>	⑤ 재판기간이 도과되었을 경우 반을 바꾸어 진행함
【1449】 제49조(판결의 통고) 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판결 정본을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심사위원회 그리고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행정책임자**에게 14일 이내에 통고한다. <개정>	【1449】 제49조(판결의 통고) 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판결 정본을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심사위원회 그리고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각 의회의 행정책임자**에게 14일 이내에 통고한다. **<개정>**	
【1450】 제50조(판결의 확정과 집행) ① 각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상소심 재판위원회의 판결과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관련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② 해당 **행정책임자는** 확정된 판결을 14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1450】 제50조(판결의 확정과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각 의회의 행정책임자는** 확정된 판결을 14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개정>**	
【1452】 제52조(재판기록의 송달과 보존) 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재판기록 일체를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행정책임자** 앞으로 송달한다. 해당 의회의 서기는 재판기록은 10년간, 판결문은 영구히 보존한다.	【1452】 제52조(재판기록의 송달과 보존) 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재판기록 일체를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각 의회의 행정책임자** 앞으로 송달한다. 해당 의회의 서기는 재판기록은 10년간, 판결문은 영구히 보존한다.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6 절 재 심 【1460】 제60조(재심의 청구) ①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관하여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확정된 판결을 선고한 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② 재심의 청구는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며,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	제 6 절 재 심 【1460】 제60조(재심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심의 청구는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며,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 **다만, 사회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 8 절 보 칙 <신설> **【0000】 제00조(소송비용의 납부책임 및 회원권 정지)** **① 고소·고발인이나 피고소·피고발인이 본법에서 규정한 각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국가법원에 가처분소송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경우에는,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1개월 안에 감리회에 완납을 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위 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완납할 때까지 모든 회원권(선거권, 피선거권 포함)은 정지된다.** **② 각 의회의 행정책임자는 전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이 확정된 경우 국가 법원에 소송비용에 대한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0000】 제00조(구상권 청구 및 회원권 정지) **① 각 의회의 행정책임자는 감리회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특정인 또는 특정 의회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상권 청구 대상자가 손해배상금을 완납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선거권, 피선거권 포함)은 정지된다.** **② 각 의회의 행정책임자는 전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법원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2 장 행정 재판법 제 4 절 재 판 【1492】 제9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제 2 장 행정 재판법** 제 4 절 재 판 【1492】 제9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④ 연회, 총회의 행정재판위원회는 두 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순서대로 해당 재판위원회가 재판하게 한다. 다만, 당사자와 동일 의회 소속 위원이 없는 반에 배정한다. <신설>**	④【1414】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5항과 통일
④ 행정재판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항 순연
⑤ 감독 및 감독회장은 연회 회원, 총회 회원이 아닌 법전문인 또는 법조인을 연회 행정재판위원, 총회 행정재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1496】 제13조(화해조정) <신설> ① 행정재판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나 행정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화해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화해조정결정은 화해조정위원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재판위원회** 및 화해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쌍방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	【1496】 제13조(화해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재판위원회** 및 화해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쌍방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② 재판위원회 → 행정재판위원회로 수정
【1516】 제33조(**작무**집행정지) 행정재판의 청구가 있은 후 이미 의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행정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의결 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1516】 제33조(집행정지) 행정재판의 청구가 있은 후 이미 의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행정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의결 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제 7 절 보 칙 <신설> **【0000】 제00조(소송비용의 완납책임 및 회원권 정지) <신설>** **① 소송의 당사자가 본법에서 규정한 각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국가법원에 가처분소송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경우에는,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1개월 안에 감리회에 완납을 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위 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완납할 때까지 모든 회원권(선거권, 피선거권 포함)은 정지된다.**	

현행	개정안	비고
	② 각 의회의 행정책임자는 전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이 확정된 경우 국가 법원에 소송비용에 대한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0000】 제00조(구상권 청구 및 회원권 정지) ① 각 의회의 행정책임자는 감리회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특정인 또는 특정 의회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상권 청구 대상자가 손해배상금을 완납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선거권, 피선거권 포함)은 정지된다. ② 각 의회의 행정책임자는 전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법원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8 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1603】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6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에 후보자 ~~예비~~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1603】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6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70일 전에 후보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시작한다. <개정>**	① 선거일정 축소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1609】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예비~~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②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현행>	【1609】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후보 **등록한 이**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후보자를 확정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보의 자격**을 취소한다. **<개정>** ②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③ <현행과 같음>	① 후보자 확정하는 내용 삽입 ②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선관위 시행세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함
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1612】 제12조(선거 시행의 공고)	【1612】 제12조(선거 시행의 공고)	

현행	개정안	비고
① 선관위는 선거일, 후보 등록기간, 등록금,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할 교회 재정관계 서류 등을 후보자 등록개시 20일 이전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① 선관위는 선거일, 후보 등록기간, 등록금,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할 교회 재정관계 서류 등을 후보자 등록개시 30일 이전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① 등록 30일 전 공고
② 후보자 등록기간은 2일로 하고, 등록시간은 매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예비 등록 마감 후 180일째 되는 날을 선거일로 정**~~한다.	③ **선거일 70일 전에 후보 등록을 마감**한다. **<개정>**	③ 선거 70일 전 등록 마감
【1613】 제13조(피선거권)	【1613】 제13조(피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은 조직과 행정법 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②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최근 2년간, 감독회장은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교회경제법이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여야 한다.		
③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예비**~~후보등록 전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후보 등록 전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④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등기(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④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④ 제출시기 보다는 사실확인이 더 중요하므로 후보등록시 제출하는게 합리적이라 생각됨

현행	개정안	비고
⑤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이후 감리회 재판법에서 처벌된 범과(일반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 제3항, 제7항, 제8항)로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⑥ 국가 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우 형이 실효된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⑦「교리와 장정」, 교회건축 등 감리회, 교회, 교인, 그리고 기관이나 단체를 보호하려다 발생한 직무상 처벌은 제외한다.		
⑧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⑨ 현직 감독이나 감리사는 **선거 당해연도 이전에 임기를 마치지 않으면**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⑨ 현직 감독이나 감리사는 **중도 사퇴하고**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개정>**	⑨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명확하게 표기
⑩ 감독 및 감독회장은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로서 총회에서 총회까지로 한다.	⑩ ~ ⑫ <현행과 같음>	
⑪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⑫ 건강진단서 소견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⑬ 대한민국 국적 ~~**외에 2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는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미주자치연회는 제외)**~~	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여야 한다. <개정>**	⑬【306】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337】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과 통일
⑭ 선거공보에 범과내용 및 전과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다.	⑭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1614】 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② 전년도 12월까지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고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당해 지방회 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④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전 소속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명된 연수 순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 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1614】 제14조(선거권) ① <현행과 같음> **②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여야한다. <개정>**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선거권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1. 연회 회원** **2.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순, 연장자순** **3. 연회 회원 외 권사로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4. 연회 회원 외 집사로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5.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② 편입여부와 상관없이 선거권 부여하고자 함 ⑤ 연회회원=선거권자 다만 동수가 안 될 경우 연회회원 외 장로, 권사, 집사 순으로 선출
【1616】 제16조(선거공보) 선관위는 **압**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최근 2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범과내용 및 전과 사실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	【1616】 제16조(선거공보) 선관위는 후보자의 성명, **소속**, 생년월일, 사진, **학력**, 경력, 정책, 최근 2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범과내용 및 전과 사실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재 선거공보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

현행	개정안	비고
보를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선거공보를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개정>	
제 4 장 후보자의 등록	**제 4 장 후보자의 등록**	
【1617】 제17조(후보자의 등록)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이는 **예비**후보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17】 제17조(후보자의 등록)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이는 후보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선거공보 원고 1통(B5용지 4매 이내로 하되 감독 후보는 최근 2년간, 감독회장 후보는 4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범과내용 및 전과 사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삭제>	⑥ 후보자 기호가 확정된 후 받는 것이 효율적임
⑪ 범죄경력조회확인(실효된 형 포함)은 **예비**후보 등록 당일 선거관리위원장과 심의분과위원장의 입회하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한다. 다만,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제5항과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범죄경력조회확인(실효된 형 포함)은 후보 등록 당일 선거관리위원장과 심의분과위원장의 입회하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한다. 다만,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제5항과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항 순연
⑬ 건강진단서(**대학병원** 발행) 1통	⑬ 건강진단서(**종합병원 및 종합검진센터** 발행)1통 <개정>	
【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① 심의분과위원회는 **예비등록한 후보자들의**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 등록한 이들의**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① 후보자와 후보 등록한 이를 구분
② 심사기간 동안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요건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기간 동안 **후보 등록한 이들의** 등록 및 자격요건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③ 심의분과위원회가 후보자의 제출서류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보고한다. ④ 선관위는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선거일 **150일** 전까지 후보자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⑤ 후보자로 등록된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심의분과위원회가 **후보 등록한 이들의** 제출서류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보고한다. **<개정>** ④ 선관위는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선거일 **60일** 전까지 후보자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개정>** ⑤ <현행과 같음>	④ 150일 선거에서 60일 선거로 축소
【1619】 제19조(후보자 등록의 공고) ① 선거일 **150**일 전에 후보자 명단과 기호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공보 및 선거 안내문을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1619】 제19조(후보자 등록의 공고) ① 선거일 **60일** 전에 후보자 명단과 기호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② **<삭제>**	① 선거 60일 전 후보 확정 ② 【1616】 제16조(선거공보), 【1630】 제30조(투표안내)와 중복
제 5 장 선거운동 【1622】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① 감독회장, 본부 **각 국 임직원과** 도서출판kmc 임직원 ② 감독, 연회 총무와 소속 직원 ③ 감리사	**제 5 장 선거운동** 【1622】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① 감독회장, **감리회** 본부 및 도서출판kmc 임직원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④ 선거관리위원 ⑤ 지방회**급** 이상 자치단체장	⑤ 지방회, **연회, 총회의** 자치단체장 **<개정>**	
【1623】 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⑥ **연화** 감독후보 합동정책 발표회는 연회 주최로 **1회**, ~~**각 지방회(연합진행 가능) 주최로 1회 진행하고, 연회에 소속된 자치기관(장로회 포함)별로 1회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⑦ 감독회장 후보 합동정책 발표회는 **연회가 주최하여 연회 권역별로 실시하며 각 연회와 총회에 소속된 자치기관(장로회 포함)별로 1회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다.**	【1623】 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⑥ 감독 후보 합동정책 발표회는 연회 주최로 **2회 진행한다. <개정>** ⑦ 감독회장 후보 합동정책 발표회는 **권역별로 3회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⑥,⑦ 그 외의 합동정책 발표회는 선관위 시행세칙으로 규정
【1624】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 **후보자 예비등록 이전에** 각 항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① 출마를 공식화하여 활동하는 행위(SNS 활동 포함) ② 선거캠프를 결성하는 행위 ③ 사적 모임을 주선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 행위 ④ ~~**예비후보 등록 2년 전부터**~~ 위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이는 후보자 등록 심의를 거쳐서 최종후보에서 제외한다.	【1624】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 **후보로 등록할 이는 선거시행공고 전까지** 다음 각 항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이는 후보자 등록 심의를 거쳐서 최종후보에서 제외한다. **<개정>**	선거일 100일 전까지 사전선거운동 금지
【1625】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일 **2년 전(당해연도와 그 전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보궐선거 시에는 총회,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보궐 선거를 공고하는 일로부터 적용한다.	【1625】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 **당해 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보궐선거 시에는 총회,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보궐 선거를 공고하는 일로부터 적용한다.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①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①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개정>**	①【1620】제20조(선거운동 정의)에 따라 수정
②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개정>**	
	③ 선거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 후보자 소속교회 교인, 관련 당사자에게 금품이나 협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③ 6항에서 이동
③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권자의 관혼상제 시 선관위가 정하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조하는 행위	④ <현행과 같음>	항 순연
④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장로회 포함),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광고 게재, 화환 증정 등의 통상적인 행위를 제외한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	⑤ <현행과 같음>	
⑤ 후보자가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⑥ <현행과 같음>	
⑥ 선거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 후보자 소속교회 교인, 관련 당사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협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⑥ <이동>**	⑥ 3항으로 이동
⑦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로 음해, 비방하는 행위	⑦ ~ ⑬ <현행과 같음>	
⑧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평신도 자치단체(장로회 포함) 행사가 아닌 후보자의 사적 모임을 주선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⑨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행위		

현행	개정안	비고
⑩ 후보 추대, 여론 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소속 구역회의 후보 추천은 제외) ⑪ 후보 등록 후 사퇴하거나 하여, 다른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행위 ⑫ 후보자들이 담합 또는 연대하는 행위 ⑬ 예배, 수련회, 부흥회, 임원회, 기도회, 기타 공적 행사에서 후보자를 소개하는 행위 외에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는 행위		
⑭ 선거 당일에 차량(비용 포함), 교통비, 식사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⑭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 및** 차량(비용 포함), 교통비, 식사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개정>**	
⑮ 야간 선거운동 제한 : 음성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한다.	⑮ <현행과 같음>	
【1626】 제26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1627】 제27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① 후보자나 **선거관리위원**, 선거권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① 후보자나, 선거권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②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권자는**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경고나 예고 없이**~~ **즉시 녹화·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불법선거운동의 주체·일시·장소·불법 내용과 중지명령 준수 여부, 중지 여부 등을 기록하여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감시원은**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녹화·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해당 선관위에 보고하고, 해당 선관위는 위법한 선거운동을 지체없이 중지시키고 총회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선거감시원 : 불법선거운동 발견 시 해당 선관위에 보고 해당 선관위 : 선거운동 중지 및 총회 선관위에 보고
③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	③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이 경	③【1609】 제9조(선관위 직무) 2항과 통일

현행	개정안	비고
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제 6 장 투표와 개표	**제 6 장 투표와 개표**	
【1630】 제30조(투표 안내)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투표장소, 투표시간, 투표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선거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1631】 제31조(투표 안내)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공보 및 선거 안내문**(투표장소, 투표시간, 투표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선거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개정>	【1619】 제19조(후보자 등록 공고) 2항 내용 추가
【1634】 제34조(전자투표) ① 감독·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선거권자에게 개인별로 보안인증을 실시하여 1명 1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 ③ 투표시간은 선거일 0시부터 17시까지(한국시간)로 한다. ④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⑤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 시행세칙에 따른다.	【1635】 제35조(전자투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투표시간은 선거일 10시부터 17시까지(한국시간)로 한다. <개정> ④ ~ ⑤ <현행과 같음>	
【1635】 제35조(해외거주자 투표) ① 해외(선교)지방회 및 해외주재 선교사의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의 감독회장 선거는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② 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③ 전자투표는 선거일 0시부터 17시까지(한국시간)로 한다. ④ 해외거주자 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 시행세칙에 따른다.	【1636】 제36조(해외거주자 투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자투표는 선거일 10시부터 17시까지(한국시간)로 한다. <개정>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제 7 장 보 칙	**제 7 장 보 칙**	
【1637】 제37조(재정) ①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② 등록금은 선관위가 정하되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④ 선거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본부가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무효의 사유가 후보자에게 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⑤ 선거비용을 결산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고, 잔여금은 은급기금으로 전환한다. <개정> ⑥ 행정책임자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사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혹은 위원회 위원이 선거비용 변상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행정책임자는 모든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킨다.~~	【1638】 제38조(재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행정책임자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의 **귀책**사유가 특정인 **또는 특정 의회나** 위원회에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개정>** ⑦ **<삭제>**	⑥ 중도사퇴 삭제 ⑦【1640】제40조(벌칙처벌) 11항과 중복되므로 삭제
【1640】 제40조(벌칙처벌) ①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나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1641】 제41조(벌칙처벌)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4년 이하의 회원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하며, 그 귀책사유는 후보자에게 있고 처벌은 동일하다.		
②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나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 중립 의무자가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제7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정직과 5년 이하의 모든 회원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선거에 관하여 선관위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후보자가 등록 후 건강상 이유(**대학병원** 발행 진단서 첨부) 이외에 사퇴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중도 사퇴나 후보담합 등, 다른 후보 지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⑤ 후보자가 등록 후 건강상 이유(**종합병원 및 종합검진센터** 발행 진단서 첨부) 이외에 사퇴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등록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 당선자가 **선거일 당일과** 취임 전에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⑥ 당선자가 취임 전에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⑦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⑧ 당선자가 취임 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취임을 유보한다.	⑧ <현행과 같음>	
⑨ **감독·감독회장 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 자와 위원회는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즉시 고소나 고발하고, 그 직임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이 변제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한다.**	⑨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에 관한 특정인 또는 특정 의회나 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판결에 의하여 밝혀지는 경우, 행정책임자는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서 결정된 배상액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위 손해배상금 사건의 특별관할로서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행정 재판법을 준용하여 재판을 수행한다. <개정>**	⑨,⑩ 선거무효, 당선무효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 구체적 명시
	⑩ **제9항의 손해배상금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부시에는 환납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정지되며 완납하지 않은 경우 감독회장은 국가법원에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⑩ 11항에서 이동 개정
⑩ 후보자에 대하여 각종 매스컴이나 각종 매체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각종 매체란 각종 유인물 배포, 공공게시판 게재, 전자메일 및 문자메시지, 광고 등을 말한다.	⑪ <현행과 같음>	
⑪ **이 법 제37조(재정) 제6항의 소송비용을 부담자가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킨다.**	⑪ **<이동>**	⑪ 10항으로 이동

제 10 편 과정법

현행	개정안	비고
【1802】 제2조(권사과정) ~~⑤ 감리회 계통 신학대학교 혹은 신학대학원 및 연회 신학원 신학계열 졸업자는 그 증서를 제출하면 과정고서를 면제한다.~~	【1802】 제2조(권사과정) ⑤ <삭제>	⑤ 권사 과정 고시 면제 기준 삭제
【1803】 제3조(장로과정) ④ 연수과정 2. 제2과정 : 교회성숙을 위하여 기독교교육, 기독교윤리, 사회복지,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에 관련하여 교육한다.**	【1803】 제3조(장로과정) ④ 연수과정 2. 제2과정 : 교회성숙과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기독교교육, 기독교윤리, 사회복지, **성경에 근거한 동성애 관련 교육과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동성애 금지와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1805】 제5조(준회원 진급 고시과정) ② 1년과정 4. 교육 -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1829】 제29조**(준회원 진급 고시과정) ② 1년과정 4. 교육 - **성경에 근거한 동성애 관련 교육과**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1810】 제10조(연회 정회원 연수과정) ⑤ 제5과정 :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	**【1831】 제31조(**연회 정회원 연수과정) ⑤ 제5과정 : **성경에 근거한 동성애 관련 교육과**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제 4 장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2155】 제12조**(공고)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는 3개월 이전에 **「기독교세계」에** 공고한다. <개정>	**제 4 장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1806】 제6조**(공고)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는 3개월 이전에 **감리회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를 제12편 9.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 제4장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 10편 과정법으로 이동해 옴

현행	개정안	비고
【2168】 제25조 채점은 시험 종료 후 응시자 인적사항을 봉인하여 즉시 실시하되 3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채점자는 매 답안지에 본인 서명을 해야~~ 한다.	【1819】 제19조 채점은 시험 종료 후 응시자 인적사항을 봉인하여 즉시 실시하되 3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155】~【2176】 →【1804】~【1827】
제 4 장 교역자 진급과정	**제 5 장 교역자 진급과정**	
【1804】 제4조(진급과정) 구역담임 교역자, 수련목회자, 군종사관후보생, 수련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	【1828】 제28조(진급과정) 구역담임 교역자, 수련목회자, 군종사관후보생, 수련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	
	⑤ 수련목회자 혹은 기관 파송 전도사로 연회 준회원 과정을 마쳤으나 연회 전까지 파송지를 결정하지 못하여 목사안수를 받지 못한 이는 자격을 준필로 하되 파송지가 결정된 후 처음 열리는 연회에서 안수를 받는다.	⑤【276】제76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12항에서 이동해 옴
⑥ 2년 과정을 5년 이내에 마치지 못한 이는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킨다.	⑥ <현행과 동일>	
	⑦ 진급 중인 여성 교역자의 월1회 생리휴가와 출산 전, 후 3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신설>	⑦, ⑧ 여성 교역자수급 및 여성에 대한 국가 제도와 정책 발전에 따른 현실화 필요성
	⑧ 임신 출산 중인 여성 교역자가 진급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신설>	
【1806】 제6조(수련목회자 과정) 수련목회자 과정은 다음과 같다.	【1830】 제30조(수련목회자 과정) 수련목회자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수련목회자는 수련목회자 영성수련회에 참석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① 수련목회자는 수련목회자 **고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영성훈련을 수료 및 심층면접에 통과 하여야 한다. <개정>**	① 필기시험, 면접 삽입
	② 수련목회자는 합격 당해연도 5월까지 서리 파송을 받아야 한다. 파송받지 못할 경우 진급을 유보하고, 당해연도 12월까지 파송받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신설>	② 수련목회자 합격 기간 내용 삽입, 현재 시항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비고
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개체교회 및 감리회 인정 기관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해에 파송 받을 수련목회자의 수를 해당 연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지 않는 교회 **및 기관**에는 수련목회자를 파송할 수 없다. **<개정>**	④【1809】제9조(직무) 5항에서 이동
	⑤ 수련목회자는 감독자인 지방회 감리사의 책임하에 상담자인 담임목사 및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로부터 목회자로서의 성품과 자질의 육성, 학문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⑤【1804】제4조(진급과정) 5항에서 이동
	⑥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감리사, 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수련전도사 파송 시 지도서약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하며 지도목사 세미나에 1회(평생) 참석하여야 한다.	⑥【1804】제4조(진급과정) 7항에서 이동
	⑦ 수련목회자의 상담자(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해당 연회에 연 2회(7월, 1월) 지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감독자(감리사)는 연 1회(1~2월) 감독자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⑦【1804】제4조(진급과정) 8항에서 이동
	⑧ 수련목회자의 상담자가 지도목사 세미나에 불참하거나 지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담자가 담임하거나 소속한 교회 및 기관에 수련목회자를 파송하지 않는다.	⑧【1804】제4조(진급과정) 9항에서 이동
제 5 장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제 5 장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12편 9.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으로 이동
【1807】제7조(설치)	【1807】제7조(설치) **<이동>**	
【1808】제8조(조직)	【1808】제8조(조직) **<이동>**	
【1809】제9조(직무)	【1809】제9조(직무) **<이동>**	

제 11 편 특별법 및 임시조치법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1 편 특별법 및 임시조치법 <신설>	특별법 및 임시조치법을 11편으로 분리
4.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1.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1) 도서출판kmc	1) 도서출판kmc	
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인수에 관한 특별법	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인수에 관한 특별법	
3) **3개 신학대학교 신학(목회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을 위한 임시조치법	3) **웨슬리신학대학원 운영**을 위한 임시조치법 **<개정>**	
~~【2098】 제1조(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교역자 수급 관련 신학<목회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 이 법의 목적은 감리회 미래를 위하여 교역자 수급을 조절하고,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감리회가 더욱 결속하며, 사명감을 갖는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로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함이다. **~~①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로 신학대학원(가~~	**【2098】 제1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감리회 미래를 위하여 교역자 수급을 조절하고,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감리회가 더욱 결속하며, 사명감을 갖는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다. <개정> **【2099】 제2조(명칭) 통합신학대학원은 웨슬리신학대학원으로 한다. <신설>** **【2100】 제3조(운영위원회 조직) 운영위원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구성한다. <신설>** **【2101】 제4조(운영위원회 직무) <신설>**	① 웨슬리신학대학원의 정원 미달과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정원조절을 위해 ② 감리교회가 요구하는 목회자의 영성과 지성을 갖추기 위해 ③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에 기인하는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함과 교회가 요구하는 건강한 목회자 양성을 위해

현행	개정안	비고
~~칭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총회 실행부 위원회에서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2021년 12월 31일 안에 구성하여 활동하게 한다.~~	① 웨슬리신학대학원 입학정원을 조정한다. ② 웨슬리신학대학원의 통합커리큘럼을 정한다. ③ 웨슬리신학대학원은 운영위원회의 학생선발기준과 교수들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한다. 【2102】 제5조(소재지) 웨슬리신학대학원은 소재지 결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웨슬리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신설>	
~~② 이 법은~~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의 통합 또는 설립 운영이 ~~될 때까지 유효하며,~~ 2024년 2월까지 ~~통합 또는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모든 제반 사항(준비, 예산확보 및 지원, 용역 및 시행 등)은 감리회 총회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은 이를 위한 모든 방안을 제시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리회는 통합 및 설립 운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칭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을 한다.~~ ~~④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간에 2022년 2월 말까지 통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웨슬리신학대학원 신설을 감리회가 직접 추진하되, 이를 위하여 감리회 본부 내에 2022년 3월 말까지 실무준비단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2103】 제6조(시행) 2024년 2월까지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통합하고, 2025년 3월부터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운영한다.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⑤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준회원 허입 및 목사 안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이미 졸업하였거나 웨슬리신학대학원 최초 졸업생이 배출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준회원 허입 및 목사안수 자격을 부여한다.~~	【2104】 제7조(경과조치)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준회원 허입 및 목사 안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2025년 웨슬리신학대학원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2024년 입학생까지는 이전 법을 따른다. <개정>	
	보 칙 <신설> 【2105】 제8조(운영위원회 규정) 웨슬리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 규정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15.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위한 발전기금 마련 임시특별조치법	2.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위한 발전기금 마련 임시특별조치법	
16. 서부선교연회 연회 및 지방회 조직과 운영 임시조치법	3. 서부선교연회 연회 및 지방회 조직과 운영 임시조치법	
41. 세계선교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	4. 세계선교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	
~~38. 호남특별연회 특별법~~	38. 호남특별연회 특별법 <삭제>	호남특별연회가 정 연회가 됨에 따라 특별법 삭제

제 12 편 각종 규정집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2 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제 12 편 각종 규정집 <개정>	정관, 규칙 삭제
제 11 편 예배서(예문)	1. 예배서(예문) <이동>	11편에서 이동
【1901】 제1조(목적)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예배서(예문)를 제정한다.	<현행과 같음>	
【1902】 제2조(내용) 예배서(예문)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범예배 순서와 각종 예식문, 그리고 감독과 교역자 예복 사용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다.	<현행과 같음>	
【1903】 제3조(예배서와 예복의 제정) 총회 성직윤리위원회에서 연구 제정한 안을 장정개정위원회가 입법의회에 상정하고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1903】 제3조(예배서와 예복의 제정) 총회 **신앙과** 성직윤리위원회에서 연구 제정한 안을 장정개정위원회가 입법의회에 상정하고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위원회 명칭 변경
1. 도서출판kmc 정관	2. 도서출판kmc 정관	
3. 세계선교사 관리규정	3. 세계선교사 관리규정	
2. 군선교회 정관	4. 군선교회 정관	
5. 교회학교 규정	5. 교회학교 규정	
22. 교회 청년회 규정	6. 교회 청년회 규정	
17. 청년관 및 청장년관 운영이사회 규칙	7. 청년관 및 청장년관 운영이사회 규칙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2287】 제6조(이사의 임기와 교체)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감리회 본부 교육국의 승인을 얻어 교체한다.	【2287】 제6조(이사의 임기와 교체)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감리회 본부 교육국의 승인을 얻어 교체한다. **<개정>**	임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는 임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 4 장 직 원 【2295】 제14조(임기) 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재선될 수 있다.	**제 4 장 직 원** 【2295】 제14조(임기) 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재선이란 단어의 자의적 해석으로 오는 혼란을 정리 하기 위해
18. 감리교회 계통학교 관리 기본규칙	**8. 감리교회 계통학교 관리 기본규칙**	
11. 학원선교회 규칙	**9. 학원선교회 규칙**	
10. 학원선교사 관리규정	**10. 학원선교사 관리규정**	
9.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144】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라 칭한다.	**11.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144】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라 칭한다.	
【2145】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교리와 장정」 과정법 **제7조(설치)에 규정된** 교역자수급 및 고시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145】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교리와 장정」 과정법 **수련목회자선발고시 및 교역자진급과정을 따라** 교역자수급 및 고시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3 장 교역자수급	**~~제 3 장 교역자수급~~**	
【2150】 제7조(직무) **「교리와 장정」 과정법 제9조(직무)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는 개체교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정 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2150】 제7조(직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1809】 제9조(직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0편 과정법 제9조(직무)에서 이동, 수정
① 매년 감리회의 교회성장계획과 개체교회와 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연간 목회자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각 연회에 통보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련목회자를 개체교회와 파송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연회별로 사정하여 선발한다.	②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를 실시하여** 수련목회자를 개체교회와 파송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연회별로 **사정하여** 선발한다. **<개정>**	
③ 매년 수련목회자의 보수를 결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를 실시한다.	④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내용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④ 8항과 통합
⑤ 개체교회 및 감리회 인정 기관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해에 파송 받을 수련목회자의 수를 해당 연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지 않는 교회에는 수련목회자를 파송할 수 없다.	**⑤ <이동>**	⑤ 개정안 【1830】 제30조(수련목회자 과정) 4항으로 이동
⑥ 수련목회자로서 기관 파송을 받을 이의 서류를 심사하여 인준한다.	**⑤ 수련목회자 및 수련목회자 과정을 마친 이의 파송기관을** 인준한다. **<개정>**	⑤ 수련목회자 과정을 마친 이, 파송기관 인준 추가
⑦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 세미나를 실시하며 지도목사의 지도보고 관리 등을 한다.	⑥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 세미나를 실시하며 지도목사의 지도보고 관리 등을 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⑧ 고시과목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⑨ 각 신학대학원의 정원 조절 문제를 협의한다. ~~⑩ 총회 산하에 통합신학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구를 두어 연구한다.~~	⑧ <삭제> ⑦ 각 신학대학원의 정원 조절 문제를 협의한다. ⑩ <삭제>	⑧ 4항으로 통합 ⑩ 웨슬리신학대학원 운영을 위한 임시조치법 개정에 따른 삭제
【2151】 제8조(파송기관) 수련목회자 파송기관은 본 위원회에서 결의한다.	【2151】 제8조(파송기관) <이동>	【2150】 제7조(직무) 5항으로 이동
【2152】 제9조(파송) 수련목회자 과정을 마친 이는 개체교회 및 기관으로 파송한다.	【2152】 제9조(파송) <삭제>	교역자수급위원회 직무가 아님
~~제 4 장 수련목회자 선발고서~~ 【2152】~【2176】 <생략>	제 4 장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이동> 【2152】~【2176】 <이동>	과정법으로 이동 (p.114~116)
제 5 장 재 정 【2177】 제34조 본 위원회 재정은 본부 예산에서 충당한다.	~~제 5 장 재 정~~ 【2151】 제8조(재정) 본 위원회 재정은 본부 예산에서 충당하고, 고시 위원 및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위원장이 본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177】 제34조와 【2178】 제35조와 내용 통합
【2178】 제35조 고시 위원 및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위원장이 본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2178】 제35조 <이동>	
6. 신학정책위원회 규정	12. 신학정책위원회 규정	
7. 이단대책위원회 규정	13. 이단대책위원회 규정	
8. 장·단기발전위원회 규정	14. 장·단기발전위원회 규정	

현행	개정안	비고
12. 성직윤리위원회 규정	**15. 신앙과 성직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위원회 명칭 변경
【2225】 제1조(목적) 감리회 목회자의 올바른 성직수행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며 성결한 삶의 원칙을 세워나가며, 교회의 대 사회 영적지도력을 확보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직자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감리회 본부 안에 성직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에서 '성직자'라 함은 연회에 소속한 모든 교역자 회원을 말한다. <개정>	【2225】 제1조(목적) 감리회 목회자의 올바른 성직수행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며 성결한 삶의 원칙을 세워 나가며, 교회의 대 사회 영적지도력을 확보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배서(예문)를 연구·제정하며,** 성직자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감리회 본부 안에 **신앙과** 성직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에서 '성직자'라 함은 연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 회원을 말한다. **<개정>**	위원회의 직무에 예배서(예문) 연구·제정 추가
【2226】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위원장은 감독회의에서 감독 1명을 파송한다. ② 각 연회에서 교역자 1명을 파송한다.	【2226】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위원장은 감독회의에서 감독 1명을 파송한다. ② 각 연회에서 교역자 1명을 파송한다. **③ 감리회 소속 3개 신학대학교는 예배학 교수 각 1명을 파송한다. <신설>**	③ 예배서(예문) 연구·제정에 따른 위원 추가
【2227】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명 ② 부위원장 1명 ③ 서기 1명 ④ 분과위원장 각 1명	【2227】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인 ② 부위원장 1인 ③ 서기 1인 ④ 분과위원장 각 1인	
【2228】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228】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229】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윤리강령을 연구하여 총회의	【2229】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윤리강령을 연구하여 총회의	

현행	개정안	비고
인준을 받아 사용한다. <개정> ② 성직자의 목회지침을 연구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사용한다. <개정> ~~③ 연회에서 제공한 교역자 인사카드를 정리하여 성직자의 인사기록(미파, 휴직, 정직, 유학, 복직, 퇴회)을 관리한다. <개정>~~ ~~④ 성직자의 재판법과 사회법에 의한 재판기록을 관리한다.~~ ~~⑤ 재판법과 사회법을 위반한 성직자는 해당 연회 심사위원회에 고소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인준을 받아 사용한다. ② 감리회 예배서(예문)와 성직자의 목회지침을 연구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사용한다. <개정>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② 예배서(예문) 연구에 관한 직무 추가 ③ 연회의 직무이므로 삭제,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3항 참조 ④,⑤ 실효성 없음
【2230】 제6조(분과위원회) 업무 분담과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각각 선출한다. ① 성직자윤리강령분과위원회 ~~② 성직자인사관리분과위원회~~	【2230】 제6조(분과위원회) 업무 분담과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각각 선출한다. ① 성직자윤리강령분과위원회 ② <삭제> ② 예배서(예문) 연구분과위원회 <신설>	② 연회의 직무 ③ 직무에 따라 분과 신설
【2231】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성직자윤리강령분과위원회 : 성직자윤리강령을 연구·제정하고, 감리회 목회지침서를 제공한다. ~~② 성직자인사관리분과위원회 : 성직자인사관리를 위해 연회에서 제출한 교역자인사카드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2231】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성직자윤리강령분과위원회 : 성직자윤리강령을 연구·제정하고, 감리회 목회지침서를 제공한다. ② <삭제> ② 예배서(예문) 연구분과위원회 : 감리회의 모범예배 순서와 각종 예식문, 그리고 예복의 사용 규정에 대한 연구·제정한다. <신설>	② 연회의 직무 ③ 분과 신설에 따른 직무 추가

현행	개정안	비고
~~【2232】 제8조(정보관리담당자) 전산 처리된 성직자의 인사기록 관리를 위해 정보관리담당자를 두고 성직자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다. <개정>~~	【2232】 <삭제>	신앙과 성직윤리위원회의 직무가 아님
14.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규정 제 2 장 조 직 【2251】 제3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본부위원회는 연회에서 선임한 20명(교역자 10명, 평신도 10명)과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16.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규정 제 2 장 조 직 【2251】 제3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해당 연회 감독이 추천한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① 호남특별연회를 타 연회와 통일
13. 역사보존위원회 규정	17. 역사보존위원회 규정	
40. 대외협력위원회 운영규정	18. 대외협력위원회 규정	
39. 이슬람대책위원회 규정	19. 이슬람대책위원회 규정	
42. 성폭력대책위원회 규정	20. 성폭력대책위원회 규정	

자치기관 규칙

현행	개정안	비고
21.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규칙 **제 3 장 임원의 직무 및 부서**	**21.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규칙** **제 3 장 임원의 직무 및 부서**	
【2360】 제7조(임원의 구성) 이 회는 ...(중략) 다만, 임원의 정수는 400명을 넘을 수 없으며 원로는 선거권이 없다.	【2306】 제7조(임원의 구성) 이 회는 ...(중략) 다만, 임원의 정수는 **500명을** 넘을 수 없으며 원로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지방 교회학교연합회의 조직 확대로 임원의 확대 필요성이 요구됨.
제 4 장 회 의	**제 4 장 회 의**	
【2368】 제15조(총회) ③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칙개정 건의안 승인 2.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3. 감사보고 4.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5. 고문, 지도의원, 자문위원 인준 6. 기타 주요한 사항	【2368】 제15조(총회) ③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칙개정 건의안 승인 2.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3. 감사보고 4.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5. 임원선출 <신설>** **6.** 고문, 지도의원, 자문위원 인준 **<개정>** **7.** 기타 주요한 사항 **<개정>**	5. 임원 선출 추가

현행	개정안	비고
25. 청년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4 장 임원 및 직무** 【2449】제8조 이 회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주관하고 매년 1월에 교육국에 사업보고를 한다.	**25. 청년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4 장 임원 및 직무** 【2449】제8조 이 회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와 사업을** 주관하고 매년 1월에 교육국에 사업보고를 한다. **<개정>**	① 활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추가
제 6 장 회 의 【2454】이 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5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 6 장 회 의** 【2454】이 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월 총회를 통하여 행정의 일관성 제고

현행	개정안	비고
26. 교회 청장년선교회 규칙 **제 2 장 조직과 회원** 【2465】제4조(조직) 이 회는 본 교회에 소속된 만 35세부터 만 **47세** 이하의 청장년(남)으로 조직한다.	**26. 교회 청장년선교회 규칙** **제 2 장 조직과 회원** 【2465】제4조(조직) 이 회는 본 교회에 소속된 만 35세부터 만 **49세** 이하의 청장년(남)으로 조직한다. **다만, 현재 만 47세 이하인 자부터 적용한다. <개정>**	청장년회의 조직과 연속성 있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만47세 → 만49세로 정정 (남선교회와 합의)
	부 칙 **【0000】**제2조(경과조치) 제4조(조직)의 연령이 시행일 이전에 해당하는 이는 이전법을 따른다.	

현행	개정안	비고
27. 청장년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2 장 조직과 회원** 【2482】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지방회 내에 속한 만 35세부터 만 **47세** 이하의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27. 청장년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2 장 조직과 회원** 【2482】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지방회 내에 속한 만 35세부터 만 **49세** 이하의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다만, 현재 만 47세 이하인 자부터 적용한다. <개정>**	
	부 칙 【0000】제2조(경과조치) 제5조(회원)의 연령이 시행일 이전에 해당하는 이는 이전법을 따른다.	
28.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2 장 조직과 회원** 【2499】제6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연회에 속한 만 35세부터 만 **47세** 이하의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다만, 만 35세 미만인 자라 하더라도 기혼자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8.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2 장 조직과 회원** 【2499】제6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연회에 속한 만 35세부터 만 **49세** 이하의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하며, 현재 만 47세 이하인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만 35세 미만인 자라 하더라도 기혼자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부 칙 【0000】제2조(경과조치) 제5조(회원)의 연령이 시행일 이전에 해당하는 이는 이전법을 따른다.	

현행	개정안	비고
29.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2 장 조직과 회원** 【2516】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만 35세부터 만 **47세** 이하로서 개교회의 모든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다만, 만 35세 미만인 자라도 기혼자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9.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2 장 조직과 회원** 【2516】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만 35세부터 만 **49세** 이하로서 개교회의 모든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하며, 현재 만 47세 이하인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만 35세 미만인 자라도 기혼자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부 칙 【0000】제2조(경과조치) 제5조(회원)의 연령이 시행일 이전에 해당하는 이는 이전법을 따른다.	

현행	개정안	비고
30. 교회 남선교회 규칙 **제 2 장 조직과 회원** 【2545】제6조(회원) 본 회 회원은 본 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30. 교회 남선교회 규칙** **제 2 장 조직과 회원** 【2545】제6조(회원) 본 회 회원은 본 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50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개정>**	남선교회 회원 나이 정정 만48세 → 만50세 이상
31.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2 장 조직과 회원**	**31.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2 장 조직과 회원**	

현행	개정안	비고
【2573】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OO지방회 개체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2573】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OO지방회 개체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50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개정>**	
32. 남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2 장 조직과 회원** 【2604】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체교회 OO연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32. 남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2 장 조직과 회원** 【2604】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체교회 OO연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50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개정>**	
제 3 장 임 원 【2606】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다만, 당연직은 본 회 구성 당시로 한다. ① 역대회장(**만 70세가 넘는 회원은 임원에서 제외한다.**) ② 지도위원: 약간 명 ③ 자문위원 : (필요에 따라) ④ 직전회장 ⑤ 회장 : 1인 ⑥ 부회장 : 약간 명 ⑦ 총무 :1인, 부총무 : 약간 명	**제 3 장 임 원** 【2606】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다만, 당연직은 본 회 구성 당시로 한다. ① 역대회장 **(다만, 은퇴 연령이 초과한 역대 회장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직전회장 **(다만, 은퇴 연령이 초과한 직전 회장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① 임원(역대회장, 직전회장) 선거권 자격기준 적시

현행	개정안	비고
【2608】 제11조(임원 및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608】 제11조(임원 및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②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③ 회장 후보자가 1명일 때는 투표를 하지 않고 총회에서 **선관위**가 당선을 선포한다.	③ 회장 후보자가 1명일 때는 투표를 하지 않고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당선을 선포한다. **<개정>**	③ 명칭 통일
④ 임원선출 방법은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회장은 선관위에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급순,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신설>**	④ 회장선출 방법 명시 - 무기명 투표 - 동수 시 연급순, 연장자순
【2609】 제12조(임원의 자격)	【2609】 제12조(임원의 자격)	
① 회장은 개체교회이 장로로 본 회 회장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임원으로 **6년 이상** 봉사한 자여야 한다. 다만, 2회 까지만 입후보 할 수 있다.	① 회장은 개체교회이 장로로 본 회 회장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임원으로 **5년 이상** 봉사한 자여야 한다. 다만, 2회 까지만 입후보**(서류 제출 및 등록금 납입)** 할 수 있다. **<개정>**	① 회장 자격기준 완화 (6년에서 5년으로 변경)
②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지방회에서 **2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여야 한다.	②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지방회에서 **1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여야 한다. **<개정>**	② 2년에서 1년으로 변경

현행	개정안	비고
33.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2 장 조직과 회원**	**33.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2 장 조직과 회원**	
【2636】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체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2604】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체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50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개정>**	① 남선교회 회원 나이 정정 만48세 → 만50세 이상
제 3 장 임 원	**제 3 장 임 원**	
【2638】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하며, 임원의 총수는 **70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당연직은 본 회 구성 당시로 한다. ① 역대회장(만 70세가 넘는 회원은 임원에서 제외한다.) ② 지도위원 : 약간 명 ③ 자문위원 : (필요에 따라) ④ 직전회장 ⑤ 회장 : 1인 ⑥ 부회장 : 약간 명(각 연회연합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⑦ 총무 : 1인(각 연회연합회 총무는 당연직 협동 총무로 한다.)	【2638】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하며, 임원의 총수는 **90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당연직은 본 회 구성 당시로 한다. **<개정>** ① 역대회장 **(다만, 은퇴 연령이 초과한 역대회장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직전회장 **(다만, 은퇴연령이 초과한 직전회장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임원의 총수 증원 (700명 이내→900명 이내) 10년 전 개정 이후 장로인 수증가에 따른 증원 ①,② 임원(역대회장, 직전회장)자격기준 적시

현행	개정안	비고
【2640】 제11조(임원 및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단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③ 회장 후보자가 1명일 때는 투표를 하지 않고 총회에서 선관위가 당선을 선포한다. ④ 임원선출 방법은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640】 제11조(임원 및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단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장 후보자가 1명일 때는 투표를 하지 않고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당선을 선포한다. **<개정>** **④ 회장은 선관위에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때는 연급순,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신설>**	③ 명칭 통일 ④ 회장선출 방법 명시 - 무기명 투표 - 동수 시 연급순, 연장자순
【2641】 제12조(임원의 자격) ① 회장은 개체교회의 장로로 본 회 회장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임원으로 **6년 이상** 봉사한 자여야 한다. 다만, 2회 까지만 입후보 할 수 있다. ②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지방회에서 **2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여야 한다.	【2641】 제12조(임원의 자격) ① 회장은 개체교회이 장로로 본 회 회장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임원으로 **5년 이상** 봉사한 자여야 한다. 다만, 2회 까지만 입후보**(서류 제출 및 등록금 납입)** 할 수 있다. **<개정>** ②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지방회에서 **1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여야 한다. **<개정>**	① 회장자격 기준 완화 (6년 이상 -> 5년 이상) ② 임원자격 기준 확대 (2년 이상 -> 1년 이상)

현행	개정안	비고
제 5 장 회 의	**제 5 장 회 의**	
【2647】 제18조(회장단 회의) 회장단회의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상임부회장, 연회연합회장, 총무, **협동총무**, 서기, 회계, 선교기금총무로 구성한다. ② 회장단회의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안 사항을 협의 처리하며 처리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47】 제18조(회장단 회의) 회장단회의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상임부회장, 연회연합회장, 총무, 서기, 회계, 선교기금총무로 구성한다. **<개정>** ② <현행과 같음>	① 협동총무 삭제